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말레이시아, “2021년 담배 수입 면허 신규 발급 없을 것”

- 압둘 라티프 압둘 카디르 말레이시아 관세청장은 올해 1월부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담배와 관련한 새로운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자프룰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20년 11월, 모든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발표
- 2020 예산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소비세는 제품 가격의 10%, 전자담배용 액상의 경우 밀리리터 당 0.4링깃의 비율로 책정되었음
- 이 세금은 현재 발효되어 있으며, 랑카위, 라부안, 티오만, 팡코르 등 자유무역섬(DFI)의 모든 소매 구역 및 소매 비즈니스 자유구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부과되고 있음. Section 6A 및 Free Zones Act 1990에 의거 자유상업구역은 조호(Stulang Laut), 클란탄(Panjang, Pengkalan Kubor), 크타(Bukit Kayu Hitam) 지역임
- 압둘 라티프 관세청장에 따르면, 여행객들을 위한 담배 제품에 대한 면세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음
- 기존의 수입 면허는 갱신할 수 있지만 새로운 면허의 발급은 현재 동결되었으며 면허 절차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담배 수입 면허 갱신을 강화하려면 12개월 이내에 설정된 최소 수량의 담배를 수입하기 위한 추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수출입 활동은 포트클랑 웨스트포트 및 노스포트(슬랑오르), 탄중 펠레파스 포트(조호), 산다칸 포트(사바), 세나리 포트(사라왁) 등 5개 항구로 제한되며, 트랜짓의 경우도 이들 항구에서만 허용
- 도로편으로의 수출 목적을 위한 활동도 이들 다섯 항구를 통해서만 허용되며, 환적항구로부터의 여행은 관세법 1967, 관세규정 2019 및 현재 관계당국의 정책에 따라 해외의 최종 목적지로 직접 설정됨
- 소형 보트에 의한 제품의 환적 및 재수출이 금지되었으며 재수출을 위한 관세 환급 편익이 있는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세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구역에서만 허용
- 환적 활동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컨테이너가 사용되어야 하며, 개품 산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재 화물로 진행되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유무역섬(DFI) 및 자유구역(FZ)으로 수입된 물량의 재고에 대해서는 동일한 DFI 및 FZ에서 저장, 소유, 판매 및 폐기될 수 있다는 설명임

* 출처 : 2021년 1월 16일, The Malaysian Reserve

2. 2월 1일부터 버터워스 '자유 무역 지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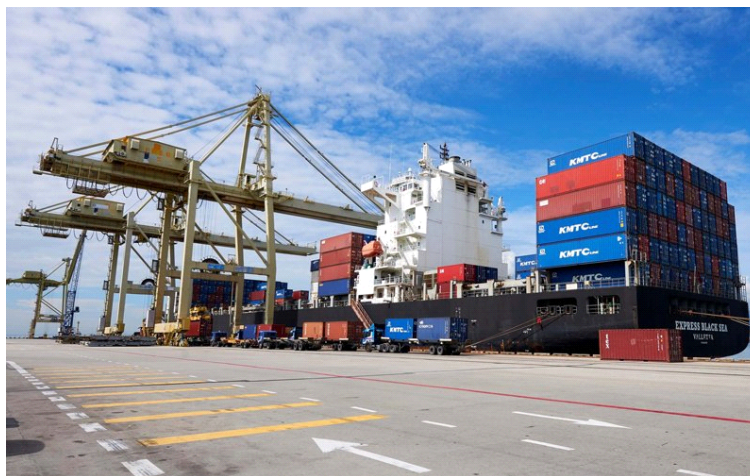


사진 1) North Butterworth Container Terminal

- 연방 항만 규제 기관인 페낭 항만위원회(PPC)가 1월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페낭의 버터워스 항구(Butterworth port)가 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대(FTZ)가 됨
- PPC의 탄 테익 쉹 회장은 퉁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이 노스 버터워스 컨테이너 터미널을 자유무역지대(FTZ)로 공표하는데 동의
- 탄 회장은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무역지대(FTZ)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버터워스를 찾을 것이므로 페낭을 다음 단계로 끌어 올린다고 설명
- 자유무역지대(FTZ)에는 무역 및 상업 목적 섹션과 공장을 위한 부문 등 두 가지 부문이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에는 물류 서비스 및 창고와 같은 상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페낭 항만위원회는 더 많은 브레이크 벌킹, 그레이딩,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 및 재수출 작업이 다양한 외국 기업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기대
- 자유 항구의 중요성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면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외국 기업들은 자유무역지대(FTZ)의 시설을 사용하고 제 3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음. 일부 제품과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관세, 소비세, 판매세, 또는 서비스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음
- 이제 페낭 항만위원회(PPC)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페낭으로 유치하는데 집중할 예정
- 페낭은 1967년까지 자유 항구였으나 그 이후로 폐지되었음
-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 초반 수출진흥을 위해서 자유무역지대(FTZ) 형태의 경제지대를 지정하였으며, 자유무역지대(FTZ)는 국가의 관세영역 안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산업단지로서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제조 기업이 입주하도록 디자인되었음

* 출처 : 2021년 1월 29일, Free Malaysia Today

3. 사라왁주 외래 야생생물 수입 금지

-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삼림공사(SFC: Sarawak Forestry Corporation)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외래 야생 생물을 주 내로 수입할 수 있는 허가를 당분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20년 12월 30일 발표
- 사라왁주 삼림공사(SFC) 야생 동물 관리자인 졸키플리 모하마드 안톤 씨는 외래종을 불법적으로 반입하여 애완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라왁의 토착 야생 생물을 위협한다면서 "만약 (이 동물들이) 불법적으로 수입된 경우, 그들은 수의서비스부나 보건부의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라왁주 내 애완동물 병원 및 관련 업소,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잠재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나 병원균 확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애완용으로 기르던 외래종이 어떤 이유로든 사라왁의 숲과 자연으로 유입될 경우 토착종의 식량 공급원에 타격을 주고 토착종보다 더 공격적이면 토착종의 개체 수를 감소시켜 자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
- 사라왁에서 마니킨방울새속(munias)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토착 조류를 대체하고 있는 외래종인 참새(Tree Sparrow)와 구관조(mynas), 그리고 토착 늑개구리(Fejervarya limnocharis)을 대체하고 있는 황소개구리(American bullfrog) 의 영향을 받아서임
- 사라왁주 삼림공사(SFC)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등 국경통제 국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항, 항구, 세관 검문소는 물론 무면허 애완동물 매장 등을 검열하여 외래종의 밀수를 막으려 하고 있음
- 사라왁주 삼림공사(SFC)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주 내의 합법적이고 면허가 있는 외래 생물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테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

* 출처 : 2020년 12월 30일, Bernama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해외 할랄 로고 84개 승인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20년 12월 1일부로 전 세계 46개국으로부터 발행되는 84개 할랄 로고를 승인했다고 줄키플리 모하마드 알-바크리 총리실 장관(종교부)이 전했다
- 해당 46개 국가에는 자킴으로부터 8개 할랄 로고를 승인 받은 호주를 비롯하여, 일본(7개), 중국(6), 인도(4), 미국(4), 브라질(3), 네덜란드(3), 필리핀(3), 남아프리카(3) 등이 포함
- 이어서, 캐나다,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파키스탄, 폴란드, 한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및 영국에서 각각 2개의 할랄 로고를 승인받았음

SOUTH KOREA			
No.	Organization & Address	Contact	Halal Logo
67	Korea Muslim Federation (KMF) 39 Usadan-ro 10gil Yongsan-gu Seoul 04405 Korea	Dr. Hussein Kim Dong Eok (President) Mr. Ahmad Cho Min Haeng (Chairman) Tel : +82-2 793 6908 / +82-2 794 7307 Fax : +82-2 798 9782 Email: kmfhalal@naver.com	
68	Korea Halal Authority Corporation (KHA) 4F, Joogdoog Tower, 600 Daejeon Chungdong-ro, Dong-gu, Daejeon City, 34625 South Korea	Mr. Jin Jae Nam (Mustafa) (Chairman) Ms. Kim Weon Suk (Safiah) (Chief Executive Officer) Tel : +82-42 222 0131 / +82-42 222 0132 Fax : +82-42 471 0773 Email: koreahalal99@naver.com Website: www.koreahalal.kr	

▲ 자킴인정 한국 할랄인증기관

- 자킴은 또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칠레, 크로아티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케냐, 리투아니아, 몰디브, 모로코,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에서 각각 하나의 할랄 로고를 승인

- 줄키플리 장관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제품이 자킴이 인정한 로고의 제품 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입업자들도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에 자킴 승인의 할랄 인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실과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4

BADAN PENSIJILAN HALAL LUAR NEGARA YANG DIKTIRAF JAKIM

KEMAS KINI 1 DISEMBER 2020

1. AUSTRALIA Australian Halal Authority & Advisers (AHAA)				2. AUSTRIA Islamic Information & Documentation Center				3. ARGENTINA Islamic Centre of The Argentine Republic (Centro Islamico de la Republica Argentina)				4. BANGLADESH Islamic Foundation Bangladesh (Baitul Moqarram National Mosque)				5. BELGIUM Halal Food Council of Europe (HFCE)			
6. BOSNIA & HERZEGOVINA Agency for Halal Quality Certification				7. BRAZIL Fambras Halal Certificação LTDA (FAMBRAS HALAL)				8. BRUNEI Lembaga Mengeluarkan Permit Import Halal Bahagian Kawalan Makanan Halal Jabatan Hal Ehwal Syariah				9. CANADA Halal Montreal Certification Authority (HMCA)				10. CHINA Shandong Halal Certification Service (SHC)			
11. CHILE Centro Islamico De Chile				12. CROATIA Centre for Halal Quality Certification (CHQC)				13. EGYPT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Quality (EOS)				14. FRANCE Ritual Association of Lyon's Great Mosque (Association Rituelle de la Grande Mosquée de Lyon)				15. GERMANY HALAL CONTROL GmbH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Body			
16. INDIA Halal India Pvt Ltd				17. INDONESIA Jamiat Ulama Indonesia (JUI)				18. IRAN Islamic Chamber Research & Information Center (ICRIC)				19. IRELAND Islamic Foundation of Ireland							
20. ITALY Co.Re.Is - Halal Italia				21. JAPAN Japan Muslim Association (JMA)				22. KAZAKHSTAN Association Halal Industry of Kazakhstan (AHIK)				23. KENYA Kenya Bureau of Halal Certification (KBHC)							
24. LITHUANIA UAB Halal Control Lithuania				25. MALDIVES Ministry of Islamic Affairs				26. MOROCCO Institut Marocain De Normalisation (IMANOR)				27. NETHERLANDS/ HOLLAND Control Office of Halal Slaughtering B.V & Halal Quality Control							
28. NEW ZEALAND Federation of Islamic Associations of New Zealand (FIANZ)				29. PAKISTAN Jamaa Markaz Uloom Islamia Mansoor (JMUIM)				30. PHILIPPINES Islamic Da'wah Council of The Philippines (IDCP)				31. POLAND Muslim Religious Union in Poland (MRU)							
32. PORTUGAL Instituto Halal De Portugal (IHP)				33. SINGAPORE Islamic Religious Council of Singapore (MUIS)				34. SOUTH AFRICA National Independent Halal Trust				35. SOUTH KOREA Korean Muslim Federation (KMF)							
36. SPAIN The Halal Institute of Spain (Junta Islámica)				37. SRI LANKA Halal Accreditation Council (Guarantee) Limited				38. SWITZERLAND Halal Certification Services											
39. TAIWAN 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Association (THIDA)				40. THAILAND 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CICOT)				41. TUNISIA 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NORPI)				42. TURKEY Kas Uluslararası Sertifikasyon Göz. Tek. Kont. Hizm. Ltd. Şti. (Kascert International)							
43. UKRAINE LLC Certification Center "Halal"				44. UNITED KINGDOM Halal Certification Europe (HCE) (formerly known as: The Muslim Food Board (UK))				45. UNITED STATES OF AMERI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IFANCA)				46. VIETNAM Halal Certification Agency Vietnam (HCA)							

Bahagian Hab Halal, JAKIM

www.halal.gov.my

IMBAS DI SINI

- 줄키플리 장관은 말레이시아 무슬림 국민들에게 해외 방문 시 자킴 승인의 할랄 로고를 휴대폰에 저장하여 제품구매 시 참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을 규격, 제도화하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기구이자 자체 승인 로고인 '자킴'(Jakim)은 중동 및 아시아 이슬람인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음
-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 마크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할랄 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위생 검사를 진행
- 정부 당국은 할랄 식품과 관련된 표준운영절차(SOP)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
- 표준운영절차에는 할랄 인증서의 '중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할랄 인증 및 할랄 식품 바코드의 디지털화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자킴 승인 할랄 로고 전체 리스트 다운로드하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vYRXjsfP9mpPifB_4tG2k17qi1_uZQy?usp=sharing

* 출처 : 2021년 1월 7일, New Straits Times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1. 말고기, 캥거루 고기, 쇠고기 섞어 할랄로 둔갑...가짜 할랄 고기 스캔들

- 말레이시아에서 각종 육류를 밀수하여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온 조직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 뉴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공모자들은 중국, 우크라이나, 남미 등지의 비할랄 인증 도축장에서 육류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 40여년 이상 기간동안 여러 정부 기관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이나 성접대를 제공해 왔다고 밝힘

- 할랄 고기 수입 과정에는 할랄 인증기관, 검역 당국, 세관, 항만 경찰이 관여함. 수입된 육류 중에는 캥거루와 말고기도 포함되며 이들을 할랄 쇠고기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 뉴스가 보도되자 현지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할랄이 아닌 고기를 먹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분노하였으며, 육류 취급점과 식당에는 할랄 진위 문의가 쏟아졌음
- 할랄(Halal)의 사전적 의미는 ‘허용된 것’으로,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해 할랄이라 함.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이 이에 해당하며,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이 해당
- 할랄의 반대는 하람(haram).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나 돼지, 개, 고양이 등의 동물 고기,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이 이에 해당
- 육류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외운 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동물의 앞쪽에서 도살하는 이슬람 방식에 의해 도축된 것만 수출할 수 있음
- 할랄 인증은 제품이 이슬람법에 따라 준비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방편으로, 인구의 60%가 무슬림인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17억(세계 인구의 약 23%)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임
- 말레이시아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 할랄 시장에서 글로벌 허브로서 자리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국가로 식품과 의약품 등 할랄 인증 제품 약 90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음
- 현지 보도에 따르면 조직원들의 신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중 수명은 체포됐음. 경찰은 밀수와 보관, 처리까지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약속했으며, 종교부 또한 왕립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고려

- 쿠알라룸푸르에 기반한 무역상 및 행상인 협회는 6000명의 회원들에 쇠고기 기반 제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영 통신사 베르나마는 “말레이시아 국내 3대 냉동육 공급업체들의 할랄 기준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 공급 라인에는 문제가 없음을 밝힘
- 할랄 사기 조직의 운영은 정부 기관 공무원이 할랄 기준을 감독 조사하는 ‘도축장’에서 시작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직에 뇌물로 포섭된 정부 관리들이 품질이 낮거나 또는 할랄이 아닌 육류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부여하고, 수입과정에서 검열을 피하기도 했으며, 말레이시아 내 보관 창고로 운송된 후 할랄 인증 육류와 혼합이 되고 가짜 할랄 로고로 재포장 단계를 거쳤음

* 출처 : 2021년 1월 2일, bloomberg

2. 검역증명서 없이 수입...2톤 넘는 뉴질랜드 치즈 압수



-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 서비스부(MAQIS)가 조호바루 BSI 세관과 출입국 검역소에서 약 4만 링깃 상당의 뉴질랜드 치즈 제품을 억류
- 조호 검역부의 누르 아피파 아흐만 국장은 ‘20년 1월 29일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수입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원산지 국가 발행의 법적 검역증명서가 없는 39,712링깃 가치의 치즈 2,080kg을 적발하여 압수

- 검역부는 이번 사건이 허가, 면허 또는 인증에 명시된 수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 서비스 규정 2011의 15(1) 조항에 의거하여 조사 중에 있음
-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형이나 6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2021년 1월 30일, The Star

IV |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 없음)